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고충처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청절차규정」 준용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충제도 이용자 대상 보호 규정 마련(안 제2조 제1항 개정)

- 1)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추가

나. ‘시정요청’이행 결과 공개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는 내용 신설
- 2)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은 청구인이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신설

다. 심사 기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7조 제4항 개정, 제8조 1항 개정)

- 1) 「소청절차규정」 준용 중인 청구서의 직권 보완·반려 근거, 답변서

기간 내 제출 촉구 및 심리기일 연기에 관한 처리 근거 신설
라. 증거제출권에 대한 처리방법 정비(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1) 「소청절차규정」 준용 중인 증거제출권 신청 시 위원회의 처리방법,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복무 등에 관한 처리방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30. ~ 11. 11.)

3) 행정규제 : 생 략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충 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고충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완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당사자가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충심사가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통보하되,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이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 청구인은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 ----- ----- ----- ----- ----- ----- ----- ----- ----- ----- <u>있으며,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제5조(보완요구) ① ----- ----- ----- ----- ----- ----- -----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 ③ (생략)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
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고충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보완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

⑤ ~ ⑧ (생략)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
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
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
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후
단 신설>

②·③ (생략)

제9조(증거제출권)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

-----.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
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
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
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증거제출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
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③ 고충심사당사자가 신청한 참
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
로 한다.

④ 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

<u><신 설></u>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 <u>⑤ 위원회는 고충심사가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u>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통보하되,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이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 청구인은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연 락 처	(044) 201 - 8654